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5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위성곤 · 임호선 · 이광희
장철민 · 박정현 · 박지혜
김원이 · 고민정 · 복기왕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개방·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가 생존전략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됨. 이에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

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

· 개정할 경우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가 많고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 등을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다.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목록 전부를 원칙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과기정통부장관 및 행안부장관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2조제2항).

마.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바.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용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제4항).

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제공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등).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으로 면책 조항을 구체화함(안 제36조제2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7조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 수요와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으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을 “제공대상”으로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목록 일부만 공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중 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 목록,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표하고, 해당 사항을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제공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촉진을 위하여”를 “촉진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을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점검방법·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가명처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을 “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로,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를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을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및”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사실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의2. (생략)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u>

<신 설>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 수요와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정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공표하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아니하거나 목록 일부만 공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중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공대상-----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 목록,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제21조의 공공

⑤ (생 략)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생 략)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u><신 설></u>	<u>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표하고, 해당 사항을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제공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생 략)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u>촉진</u>을 위하여 품질 진단</u>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촉진 및 「인공지능 발전</u>

·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
다.

③·④ (생략)

<신설>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공지
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제공
을 위하여-----.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
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을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
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
이터 관리체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정
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 인증의 기준·절차·점검방법 ·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 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 습용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④ (생략)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 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 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 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④ ~ ⑥ (생략)

<신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다만, 제27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가명처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 등-----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위한-----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36조(면책) ① (생략)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③ -----

-----신청인 및 공공기관-----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공공기관의 장-----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

③ (현행과 같음)